

核에너지開發의 法的 問題點

李 相 敦*

—————》 차 리 《—————

I. 序 說

II. 核에너지의 開發에 대한 政策上의 論爭

- (1) 核에너지에 대한 贊反論爭
- (2) 核에너지開發의 에너지 및 環境政策上 諸問題點

III. 核에너지開發의 法的 規制

- (1) 美國의 法制
- (2) 우리 나라의 法制

IV. 核廢棄物의 處理

- (1) 放射性廢棄物의 問題
- (2) 核燃料再處理에 관한 各國의 政策

V. 核事故 被害賠償法制

- (1) 美 國
- (2) 우리 나라

VI. 結 語

I. 序 說

현재 우리 나라는 3基의 原子力發電所를 가동하고 있으며 6基를 건설 중에 있고, 이 외에도 2基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1984년의 우리 나라의 發電量 중 原子力發電所가 차지하는 比重은 13.5%에 불과하지만 11基의 原子力發電所가 모두 준공되는 1996년에는 3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한편, France는 전체 전력의 48%를 原子力發電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Belgium은 45%, Sweden, Finland 및 自由中國은 각각 약 40%의 전력 수요를 核發電으로 공급하고 있다. 日本은 현재 약 19%를 原子力으로 받

* 中央大 法大 助教授·法博

* 中央大學校 中央文化研究院의 研究費에 의한 研究임.

1) 1984년의 에너지源別 發電設備 比重은 석유 56%, 석탄 22%, 원자력 13.5%, 수력 8.5%인데, 1996년에는 원자력 34%, 석탄 32%, 석유 14%, 수력 12%, 기타 8%로 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中央日報, 1984. 10. 5 2면). 그러나, 原電 11, 12號는 有煙炭 代替 등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다(東亞日報, 1983. 12. 20 2면).

전하고 있으나, 1990년에는 그 비율이 27%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英國과 西獨은 현재 각 20% 및 11%의 전력을 原子力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世界 최초로 核에너지를 개발하고 또한 역시 최초로 商業化한 美國의 原子力發電量은 總發電量의 13%에 불과하다. 현재, 世界에서 가장 野心的인 核發電計劃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는 France 로, France 政府는 1990년까지 原子力發電의 比率이 70%를 점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초의 商業的인 高速增殖爐(breeder reactor)인 Super-Phenix 를 今明간 가동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核에너지는 石油와 石炭이라는 에너지資源을 갖고 있지 못한 유럽의 產業國家들과 日本, 自由中國 그리고 우리 나라와 같은 나라에게는 분명히 “希望의 未來의 에너지源”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原子에너지의 宗主國이라고 할 수 있는 美國에서는 70년대초부터 거세어진 環境保存論者들의 反對運動과 核에너지 產業體의 經營問題, 그리고 1979년의 유명한 Three Mile Island 事故로 인하여 核에너지의 未來는 매우 불투명하고 때로는 비관적으로 보이기도 한다.³⁾ 그러나 周知하듯이, Reagan 行政府는 다시 核에너지의 研究·開發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美國에서의 核에너지의 未來가 반드시 悲觀的인 것만은 아니고, 앞으로 安全基準의 強化와 廢棄物의 永久的 處理場所가 지정되는 대로 核產業은 다시 成長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先進諸國에서는 核에너지의 開發이 큰 政治的 爭點으로 등장하였음은 우리가 新聞紙上을 통하여도 익숙히 알고 있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核에너지의 利用은 그 국가의 法體系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복잡한 訴訟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核에너지의 受容이 별다른 政策的 또는 政治的 論爭이 없이 쉽게 이루어졌으며, 法的인 論爭은 더더구나 없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原子力發電所로 대표되는 核에너지가 주로 政策決定者와 業界 및 科學·技術 專門家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法律

2) TIME, Feb. 13, 1984, pp. 12~14.

3) 상세는 TIME, Feb. 13, 1984, pp. 4~11(Cover Story) 참조.

家들은 이러한 문제를 「法外」의인 문제로 간주하여 하등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核에너지의 科學과 技術이 얼마나 복잡하든간에 어떠한 社會가 核에너지를 受容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受容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規制하는가 하는 문제는 科學者나 技術者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는 그 社會全體에 있어서 너무나 重大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國民的 輿論과 審判의 判斷을 따라야 할 것이다. 즉, 이도 궁극적으로는 法과 政策 (law and policy)의 문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러한 重大한 決定이 극소수의 政策決定者와 專門科學者의 手中에서 左右될 것인바 이는 民主主義와 法治主義의 精神에 違背된다.

本稿는 우선 核에너지의 開發에 관한 政策上의 論爭과 問題點을 개관하고 관련되는 法的 問題點 또는 法的 側面을 다루려 하는 것이다.

核에너지 開發과 관련하여 세 가지 側面에서 法的인 爭點이 부각된다. 첫째는, 核에너지 事業의 規制인데, 주로 原子力發電所의 建設 및 運營의 許可 및 規制의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는, 核廢棄物의 處理에 관한 法律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核事故로 인한 被害를 賠償하기 위한 法的 裝置에 관한 爭點이다.

本稿는 주로 가장 오래된 核國家인 美國의 法制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法制에서의 문제점을 다루기로 한다.

II. 核에너지의 開發에 대한 政策上의 論爭

核에너지야말로 가장 많은 論爭의 대상이 된 에너지 資源인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特思에서 유래한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核에너지는 軍事的으로 먼저 應用된 후 平和的 利用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核武器는 人類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 自명한 탓으로 많은 사람들은 核의 科學과 技術은 그 자체가 危險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人間의 科學的 知識과 能力은 核에너지를 완전히 統制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많은 科學者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核廢棄物의 安全

한 처치방법이 고안될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최소한 現在の 時點에서 볼 때 原子爐의 安全度와 核廢棄物의 處理를 不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많다는 점이다.

核에너지 開發에 관하여는 經濟性은 물론 政治的 考慮 등 여러 가지 요소가 政策的 問題로 많이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資源과 環境의 側面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며 이에 앞서서 核에너지에 대한 贊反論爭을 개관하기로 한다. 이러한 政策上的 見解의 對立은 法的 規制 및 法的 判斷에도 影響을 미치게 마련이다.

(1) 核에너지에 대한 贊反論爭

재래식의 石炭을 사용하는 火力發電所가 초래하는 극심한 大氣汚染, 그리고 1973년의 石油輸出國機構(OPEC)의 禁輸 조치로 인한 에너지波動은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原子力이야말로 未來의 豐饒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에너지源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에너지 危機가 지나고 나서는 核에너지를 보다 批判的으로 보는 立場이 농후하여 졌는데, 核에너지를 둘러싼 贊反論爭을 要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核에너지에 反對하는 環境保護主義者들이 주장하는 論據는 아래와 같다.

첫째, 核에너지는 매우 위험한 에너지源이라는 것이다. 放射能 누출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正常的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放射能을 뿜고 있는 核廢棄物(nuclear wastes)을 산출한다.

둘째, 核에너지는 결코 저렴한 에너지源이 아니라는 점이다. 核燃料인 우라늄鑛의 價格은 上昇一路에 있으며, 發電所건설비는 三重, 四重의 安全裝置로 인하여 急上昇하고 있으며, 또한 核發電所의 건설 과정에 주어지는 政府의 補助金, 稅制上 惠澤 등을 相殺하면 결코 核에너지가 값싼 에너지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核發電所 등 核施設은 테러리스트의 標的이 될 수 있으며, 核物體의 運送 과정에도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네째, 核에너지는 核武器의 擴散을 촉진하며, 이는 人類의 未來를 어둡게 한다는 점이다. 즉, 核에너지가 平和的 目的에만 사용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政情이 불안한 地域의 國家들이 核에너지 施設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發電보다는 오히려 核武器의 製造를 위하여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立場에서는 核에너지는 人類에게 惠澤을 주기보다는 災殃을 가져다 주는 “잘못된 技術”(faulty technology)로서, 더 이상의 核發電所 건설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한편, 核에너지 開發에 贊成하는 核科學者, 核產業體 및 政策決定者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核에너지는 매우 깨끗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石炭은 물론 石油을 사용하는 火力發電所가 야기하는 大氣汚染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核에너지는 經濟的인 에너지라는 것이다. 美國의 核發電 電氣의 높은 單價는 앞으로 同一型의 標準原子爐를 사용함으로써 하락될 수 있으며, 石炭·石油을 사용하는 火力發電所가 초래하는 保健費用을 감안하면 역시 核發電이 보다 經濟的이라는 것이다.

셋째, 核事故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事故의 確率은 극히 작으며, 또한 被害는 극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째, 核廢棄物의 處理는 앞으로의 연구에 의하여 해결될 것으로 그리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째, 核擴散은 政治的인 또는 對外政策上的의 문제로서 별도로 분리되어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立場에서는 未來의 에너지 수요는 核에너지의 開發에 의하여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고갈되어가는 石油은 自動車나 航空機 등 運送手段의 燃料과 化學工業의 原料로서 절약하여야 하며 電氣를 얻기 위하여 귀중한 石油을 태우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장한다.⁴⁾

이상이 核에너지에 대한 贊反論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論爭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은 核에너지의 문제를 보도하는 言論機關의 태도이다. 核에너지에 대한 言論機關의 報道는 일반적으로 核에너지가 가져다 주는 惠澤(benefits)보다는 危險(risks)과 費用(costs)을 강조하는

4) W. Rodgers, Jr.,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w* (1979), pp. 818~821.

성향이 있으며,⁵⁾ 또한 核技術을 다룸에 있어서도 核發電所의 平常의인 運營에서의 安全性보다는 假想的인 危險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⁶⁾ 이러한 報道機關의 다소간의 偏見과 70년대의 產物인 環境保護主義運動은 一般大衆에게 核에너지開發은 “危險한 장난”이라는 式의 先入見을 심어 주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核에너지 開發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核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知識을 갖고 있는 核物理學者 및 核技術者들이다. 사실, 核에너지에 反對하는 사람들은 核技術에 대한 전문적 知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核分野야말로 “知識의 偏重”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⁷⁾ 이러한 이유로 核에너지 論爭은 妥協을 볼 수 없는 平行線의 樣相을 보이고 있다.

核에너지 開發에 관한 상세한 문제점을 核科學者의 論文⁸⁾을 통하여 보기로 한다. 核科學者의 論文은——그에 찬성하던 반대하던간에——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警청할 가치가 있다.

(2) 核에너지開發의 에너지 및 環境政策上 諸問題點

原子力發電所는 石炭을 사용하는 煤炭의 火力發電所와 비교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水力發電所는 地理的인 제한을 받으며 土地資源을 消費시키고, 또한 景觀的 價値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리고 石油나 天然가스 는 發電用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制限된 資源이기 때문에 原子力에 대한 代替에너지源으로 생각될 수는 없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石炭을 사용하는 火力發電所는 安全上, 그리고 環境의 側面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하다. 표준적 규모의 火力發電所(1,000 메가와트級)는 每抄 500 파운드의 二酸化炭素(carbon dioxides: CO₂)와 10 파운드의 亞黃酸가스(sulfur oxides: SO)를 大氣中에 放出한다. CO₂는 자체로서는 無害하지만 大量排出은 地球의 氣候를 變化시키는 惡影響

5) Nealey and Hebert, *Public Attitudes Toward Radioactive Wastes*, in C. Walker et al. (eds.), *Too Hot To Handle?* (1983) pp. 94~111, at 105.

6) Slovic and Fischhoff, *How Safe Is Safe Enough? Determinants of Perceived and Acceptable Risk*, in C. Walker et al., *supra* note 5, pp. 112~150, at 116.

7) Woodhouse, *The Politics of Nuclear Waste Management*, in C. Walker et al., *supra* note 5, pp. 151~183, at 159.

8) Cohen,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21 *Natural Resources Journal* 703(1981).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SO는 有害한 氣體로 每發電所에서 배출되는 SO로 인하여 每年 약 6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호흡기 疾病을 발병하고 그 중 25명이 死亡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每發電所는 自動車 20만대가 배출하는 것과 同量의 아질산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연기와 먼지는 물론 發癌物質인 benzpyrene과 水銀, cadmium 등 重金屬을 방출하고, 또한 每分 1,000 파운드 이상의 재를 배출하고 있다. 근래에 考案된 排出規制裝置는 SO 氣體와 NO 氣體의 배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每火力發電所는 每年 약 5명의 人命被害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⁹⁾ 뿐만 아니라, 이런 규모의 火力發電所를 一年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石炭의 採掘 과정에서도 年間 2명의 鑛夫가 사망하는 것으로 통계는 보여 주고 있다.¹⁰⁾ 이러한 이유로 核에너지 贊成論者들은 核發電所야말로 環境汚染이 적은 깨끗한 에너지源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核發電所에서의 事故로 인한 放射能 流出에 대하여는 1975년에 美國의 核規制委員會(NRC)가 발표한 報告書가 가장 권위적인데 이에 의하면, 가장 悲觀적인 假說에 의할지라도 原子爐로부터의 放射能 漏出로 인한 死亡은 年間 1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同級의 石炭사용 火力發電所가 초래하는 人命被害에 미달한다. 同 報告書는 가설적인 最惡의 事故의 경우에 최초의 數週에 3,000~4,000명이 사망하고 30年內에 수만명이 각종 癌으로 사망하며 死亡者 수에 못지 않은 기형아가 출생할 것이며, 財産被害는 100억弗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 그러나, 同 報告書는 이러한 극단적인 事故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사고는 數名정도의 人命被害만을 초래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¹¹⁾

事故에 의한 放射能 流出을 제외한다면 核에너지 開發에 대한 論爭은 주로 核廢棄物의 處理問題에 집중되고 만다. 核에너지의 開發에 反對하는 環境保護主義者들은 수천년 또는 수만년 동안이나 放射性을 보유하게 될 核廢棄物을 남겨 놓는 것은 未來世代에 대하여 지극히 無責任한 처사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反對論에 대하여 核科學者와 核技術者들은 아래의 같이

9) *Ibid.*, at 703~704.

10) W. Rodgers, Jr., *supra* note 4, at 831.

11) *Ibid.*, at 831~832.

주장한다.

核專門家の 견해에 의하면 核發電所에서 每年 막대한 量의 위험한 核廢棄物이 배출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혀 年·센스이다. 大型核發電所에서 每年 배출되는 核廢棄物은 기껏해야 2~3 큐빅 야드이고 이러한 發電所의 年間賣出額의 1%만 투자하면 이를 안전하게 물을 장소를 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放射能이 人體에 미치는 害惡은 重金屬과 같은 다른 發廢物質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욱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放射能은 쉽게 感知할 수 있기 때문에 放射能에 대한 공포는 과장된 것이다.¹²⁾

또한, 核發電所에서 배출되는 사용된 燃料(spent fuel)가 모두 高準位의 放射性(high level radioactive)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용된 燃料는 原子爐(reactor)에서 제거되어 發電所內에서 수개월간 보관되는데, 이 동안 半減期가 짧은 放射性 同位元素는 消滅되는 데 가장 위험한 Iodine 121은 半減期가 8일에 불과하여 이 기간 내에 완전히 消滅되고 만다. 이 단계에서 廢棄物은 再處理플랜트(reprocessing plant)로 옮겨지는데 이 곳에서 fuel pin은 절단되어 酸에 용해되어서 化學的 處理를 거쳐 uranium과 plutonium으로 분리되는데 plutonium은 高速增殖爐(fast breeder reactor)에서 再使用될 수 있다. 酸에 녹지 않는 metal fuel pin은 가장 중요한 高準位 放射性 廢棄物이며, neptunium, americurium 및 curium도 역시 위험한 廢棄物이다.

이러한 高準位 放射性 廢棄物(high level wastes)은 길이 3미터 직경 30센티의 유리실린더에 들어진 후 다시 두터운 스텐레스 스틸 케이스에 넣어지는데, 1천 메가와트級 核發電所는 每年 위와 같은 케이스(canister) 10개 정도의 폐기물을 배출한다. 각 케이스는 10미터 간격으로 매장되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每年 全美國의 核發電所에서 산출되는 核廢棄物의 케이스는 0.5 km² 이내에 매장될 수 있다. 地下에 매장될 核廢棄物이 야기하는 위험성은 주로 감마線이라 할 수 있는데, 地下에 깊이 묻혀 있는 케이스로부터 地上에 도달되는 감마線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

12) Cohen, supra note 8, at 705~706.

며, 또한 쉽게 感知될 수 있다. 따라서, 地下에 안전하게 묻혀 있는 放射性 廢棄物은 危險을 거의 야기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地下水가 없고 또한 地下水가 침투하여도 쉽게 용해되지 않는 安定된 地質構造下에 埋沒되어야 할 것이다.

核廢棄物은 300년이 지나면 自然 우라늄鑛石 정도의 放射性을 띠게 될 것인데, 地表下 2,000 피트의 환경은 수백만년이라도 變化가 없을 것이다. 結論으로, 核廢棄物은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으며, 核에너지야말로 現世代가 未來의 世代에 대하여 물려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確實한 에너지源이라는 것이다.¹³⁾

위와 같은 見解가 적절히 보여 주듯이 核에너지는 결코 環境保護主義者나 平和主義者들이 생각하듯이 “위험한 不必要惡”도 아니고 또한 “人類에 주어질 축복 받은 贈物”도 아니다. 核에너지는 적절히, 그리고 신중하게 사용되면 훌륭한 에너지源이 될 것이고,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核에너지의 安全한 活用을 최대한 保障하는 것인데, 法律家와 法學, 그리고 法院도 이에 상당히 중요한 役割을 할 수 있어야 한다. 本稿의 核心은 바로 여기에 있다.

Ⅲ. 核에너지開發의 法的 規制

核에너지가 관련된 모든 事業은 최초부터 엄격한 法的 規制를 받아왔다. 本稿에서는 우선 美國에서의 核에너지 規制 法制를 許可節次와 관련된 立法 및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原子力法이 규정하는 法的 規制를 검토하기로 한다.

(1) 美國의 法制

(가) 原子에너지法(Atomic Energy Act)——由來와 發展——： 原子에너지는 최초부터 美國政府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리고 原子에너지는 그 可恐한 威力을 1945년에 日本에서 과시하였다. 제 2

13) *Ibid.*, at 706~721.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核에너지를 장차 어떻게 管理·規制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특히, 原子에너지의 平和的 利用을 촉진하기 위한 方途가 모색되었다. 議會는 1946년에 「原子에너지法」(Atomic Energy Act of 1946)¹⁴⁾을 제정하여서 위와 같은 關心에 回答을 提供하였다. 同法은 原子에너지의 개발과 管理를 엄격한 聯邦政府, 특히 民間人統制(federal civilian control)下에 두었다. 당시, 美國은 原子에너지의 技術을 보유한 唯一한 國家로서 原子에너지는 國家安保上 막대한 重要性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聯邦政府의 獨占的 規制下에 놓인 것은 당연하였으며, 民間人統制의 原則은 비록 原子에너지가 軍事的目的下에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美國의 傳統인 民間統制에 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여하튼 1946년에 제정된 同法은 核過程(nuclear process)의 모든 분야가 聯邦政府의 統制(control)下에 있음을 明文으로 선언하였고, 따라서 核分裂物質의 생산, 소유, 사용, 운송 등 原子에너지의 모든 局面은 聯邦政府의 許可를 말도록 하였다.¹⁵⁾ 이러한 엄격한 規制와 許可의 原則은 현재 까지도 변함이 없다.

1946년의 同法은 核에너지의 開發을 관장하기 위한 두개의 政府機構를 탄생시켰는데, 그 하나는 獨立規制委員會인 原子力委員會(Atomic Energy Commission)이고 다른 하나는 原子에너지에 관한 兩院合同特別委員會(Congressional Joint Committee on Atomic Energy)이다. 原子力委員會(AEC)는 核에너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權限을 부여 받았으며, 議會의 特別委員會는 原子力委員會의 活動을 포함한 核에너지에 관한 모든 現況을 議會가 보다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原子力委員會는 核에너지가 民間化한 된 이후 民間의 核에너지 活動을 전적으로 규제·감독하게 된다.¹⁶⁾

1953년, Eisenhower 大統領은 「平和를 위한 原子力計劃」(Atoms for Peace Program)을 발표하여 原子 에너지 技術을 民間에 開放하였다. 이 에 따라, 1954년에 原子에너지法은 改正되었는데 이는 주로 核에너지의

14) 60 Stat. 755.

15) Section §1 (b).

16) D. Zillman and L. Lattman, *Energy Law* (1983), pp. 592~593.

商業化를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原子力委員會는 民間業者가 原子에너지技術을 사용하는 것을 許可(license)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原子에너지가 民間分野에 개방된 후 약 10년이 지나는 동안 核에너지가 商業적으로 응용될 가능성은 주로 核發電所의 건설을 통한 電力의 供給임이 분명하여졌다. 따라서, 原子力委員會의 許可와 規制는 주로 核發電所의 건설과 운영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輕水原子爐(Light Water Reactor: LWR) 방식이 가장 유망한 商品으로 대두되었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General Electric社와 Westinghouse社는 石炭을 사용하는 火力發電所와 價格面에서 경쟁이 되는 原子爐設備을 市場에 제공하였다. 대체로 이야기 해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核發電所 建設업계는 好況을 누렸다.¹⁷⁾

한편 原子力委員會는 이론적으로는 原子力事業者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業界와 유착되어 있다는 批判論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原子力委員會의 委員의 대부분이 原子科學者 출신이어서 業界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탓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변화는 Nixon 行政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71년 Nixon 大統領이 임명한 新任 原子力委員會 委員長 James Schlesinger 博士는 核業界와는 무관한 최초의 委員長으로 原子力委員會의 許可節次를 개혁하여 環境的 理由를 근거로 한 反對意見이 反映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

1974년의 에너지機構改編法(Energy Reorganization Act)에 의하여 原子力委員會는 研究와 開發業務는 신설된 에너지研究開發廳(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으로 이관되었으며, 規制와 許可의 기능은 역시 신설된 核規制委員會(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로 이관되었고 따라서 原子力委員會는 解體되었다. 1977년에 에너지研究開發廳은 신설된 에너지省(Department of Energy)에 흡수되었다. 같은 해에 議會의 合同特別委員會는 역시 解體되었고 核에너지에 대한 관장업무는 上·下院의 관련 常任委員會에 分散되었다.

17) Quirk and Terasawa, Nuclear Regulation: An Historical Perspective, 21 *Natural Resources Journal* 832, 832~837 (1981).

18) R. Liroff, *A National Policy for the Environment* (1976), pp. 64~67.

따라서, 현재로는 임기 5년의 5인의 委員으로 구성된 獨立規制委員會인 核規制委員會(NRC)가 民間 部門의 核에너지의 使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規制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軍事 部門의 核에너지에 관하여는 國防省이, 核物質의 運送에 관하여는 運輸省이, 그리고 放射能의 排出基準規制에 관하여는 環境廳(EPA)이 또한 일차적인 規制權限을 갖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州 및 地方政府가 核에너지를 독자적으로 規制할 수 있나 하는 문제가 남는다.

本稿에서는 가장 중요한 核規制委員會의 核發電所 건설 및 운영의 許可(licensing) 절차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나) 核發電所의 許可節次: 核發電所를 建設하여 가동하기 위하여 절차야 하는 現行節次는 다음과 같다.¹⁹⁾

核發電所를 建設하고자 하는 事業者는 核規制委員會(NRC)에 建設許可(construction permit)를 申請하여야 한다. 申請書에는 事業者가 작성한 豫備的 安全分析報告書(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環境報告書(environmental report) 그리고 獨占禁止法 違反與否를 판단할 수 있는 資料가 첨부되어야 한다. 要件이 갖추어진 申請은 NRC의 스태프에 의하여 검토된다. NRC는 자체의 검토와 조사를 거쳐서 安全評價報告書(safety evaluation report)를 작성한다. 이 報告書는 15명의 核專門家로 구성된 原子爐安全諮問委員會(Advisory Committee on Reactor Safeguard: ACRS)에 회부된다. ACRS는 公開會議를 개최하여 위의 報告書를 검토한다. ACRS는 검토 結果를 NRC에 書面으로 통보한다.

環境保護의 측면에서는 위와 유사한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즉 事業者는 發電所의 建設이 미치는 環境的 影響을 다룬 環境報告書(Environmental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報告書를 參照하여 環境影響評價書案(Draf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또한 計劃된 發電所가 聯邦水質汚染規制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 규정된 排出基準에 합치하는가에 관하여 環境廳(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獨占禁止法의 違反與

19) D. Zillman and L. Lattman, *supra* note 16, pp. 594~595.

否에 關하여 法務長官의 確認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公開聽聞(public hearing)이다. 聽聞은 3人의 委員으로 구성된 原子力安全許可委員會(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ASLB)의 주재 하에 개최된다. 이 聽聞의 목적은 문제의 核發電所가 세워질 地域住民들로 하여금 政策決定過程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들의 利益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ASLB의 決定은 다음의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첫째, ASLB는 發電所 建設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어떠한 이유로 ASLB는 許可를 거부할 수도 있다. 셋째, 事業者의 희망에 의하여서 ASLB는 環境問題단을 별도로 심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環境問題가 통과되면 安全問題가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ASLB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抗訴委員會(Atomic Licensing Appeal Board: ALAB)에 抗訴할 수 있다. ASLB나 ALAB에 의하여 定된 決定은 NRC의 委員(Commissioner)에 의하여 復될 수 있다. NRC의 決定 그 자체는 司法審査, 즉 聯邦抗訴法院 또는 聯邦大法院의 判決에 의하여서 復될 수 있다.

發電所의 建設허가가 定되면 이제 事業者는 실제로 原子爐를 示한 發電所 示를 設하게 된다. 建設이 거의 完료되어가게 되면 事業者는 稼動許可(operating license)를 NRC에 申請하여야 한다. 稼動許可는 核發電所가 設대로 設되었으며 安健全하게 稼動할 수 있음을 確認하는 것인데, 이를 申請하는 事業者는 상세한 安全分析報告書와 環境報告書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原子爐의 安全 또는 構造에 變化가 있었다면 海명되어야 한다. ASLB는 모든 면에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稼動許可를 내어 준다. 이 경우 利害關係人이 要求하면 公開聽聞이 行하여져야 한다.

稼動許可를 받으면 事業者는 최초의 核燃料를 原子爐에 넣어서 試運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時점이 바로 核發電所가 稼動을 始하는 단계이다. 試運轉 始後 約 6개월 후에 發電所는 商業的 本格 稼動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1960년대에는 核發電所의 建設 및 稼動許可에 대한 反對 또는 異議提

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62년~1966년 사이에 신청된 26건의 核發電所 建設許可 중 오직 3건에 대하여만 異議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1967년~1970년 사이에는 74건 중 24건에 대하여 異議가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異議가 提起되지 않는 建設許可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異議는 대부분 安全 및 環境에 대한 危險에 근거한 것이다.²⁰⁾ 따라서 核에너지는 1970년에 들어서서 매우 不信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는 또한 새로운 法律이 核에너지 開發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法律은 물론 環境政策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原子力委員會는 核發電所 건설허가에 있어서 環境의 側面을 參照할 權限이 없으며, 環境에 미치는 影響은 政府의 他機關의 소관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原子力委員會의 立場은 法院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즉, 1969년 New Hampshire州는 Vermont Yankee發電所의 建設에 반대하여 原子力委員會가 環境的 要素를 무시하였다고 法院에 提訴하였는데, 第1抗訴法院은 原子力委員會側을 지지하였다.²¹⁾

위의 判決이 내려진 후 얼마후 NEPA가 議會를 통과하고 1970년부터 效力을 발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ermont Yankee件 判決에 근거하여 原子力委員會는 核發電所 建設허가시에 環境의 측면을 독자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없다는 立場을 견지하였다. 原子力委員會의 이러한 立場은 1971년의 Calvert Cliffs 判決²²⁾에 의하여 打破되었다. D.C.地區 聯邦抗訴法院은 NEPA는 原子力委員會의 許可節次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判決에 대하여 당시 새로 임명된 原子力委員會 委員長 James Schlesinger는 大法院에 上告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위의 判決에 따라서 同委員會는 規則을 改正하여 環境의 側面이 反映되도록 하였다.²³⁾

또 하나의 문제점은 許可申請된 原子爐에 관한 情報의 公開에 관한

20) *Ibid.*, pp. 595~596.

21) *New Hampshire v. AEC*, 406 F.2d 170(1st Cir. 1969).

22) *Calvert Cliffs Coord. Comm. v. AEC*, 449 F. 2d 1109(D.C. Cir. 1971).

23) R. Liroff, *supra* note 5, at 130~132.

역사이다. 최초의 原子에너지法은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는데, 유명한 Fermi 1 事件을 계기로 法律이 개정되었다. Fermi 1 은 1956년 8월에 建設許可가 주어진 최초의 高速增殖爐이었는데 Detroit 市 都心에서 30 마일 떨어진 곳에 建設되도록 되어 있었다. 許可 과정에서 ACRS 는 Fermi 1 이 都心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建設에 반대하였으나 原子力委員會(AEC)는 이를 무시하고 許可를 부여하였다. 原子力委員會에서의 聽聞 과정에서 ACRS 의 報告書는 秘密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原子力委員會의 許可決定에 不滿을 품은 ACRS 의 한 委員이 ACRS 의 報告書 내용을 一般에 누설·공개하였다. 이에 Detroit 地域에 근거를 둔 몇몇 勞動組合이 發電所 建設허가를 反對하여 原子力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하였다. 그러나, 原子力委員會는 異議申請을 기각하고 Fermi 1 에 대한 許可를 再確認하였다. 그러자 勞動組合側은 聯邦抗訴法院에 上訴하였는데 聯邦抗訴法院은 原子力委員會의 許可決定을 취소하였다.²⁴⁾ 이에 原子力委員會는 聯邦大法院에 上告하였는데 聯邦大法院은 聯邦抗訴法院의 判決을 破棄, Fermi 1 의 建設許可決定을 確定시켰다.²⁵⁾ 聯邦大法院은 原子爐의 安全性이 완전히 立證되지 않았다는 主張을 배척하고 安全性에 대한 原子力委員會의 判斷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判示하였다. Fermi 1 은 그 후 建設이 완료되었으나 여러 가지의 문제로 상업적 稼動을 못하고 있다가 冷却裝置의 고장으로 原子爐가 거의 鎔解(melt down)될 뻔한 事故가 있는 후 결국 退役(decommission)되고 말았다. 위의 訴訟 이후 議會는 法律을 개정하여 ACRS 의 報告書가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또한 建設許可에는 반드시 公開聽聞을 거치도록 하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²⁶⁾

(다) Vermont Yankee 判決²⁷⁾ : 原子力發電所의 許可와 關連하여 제기된 수많은 環境訴訟 중 가장 중요한 判決의 하나는 1978년의 Vermont Yankee 判決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24) International Union v. U.S., 280 F. 2d 645(D.C. Cir. 1960).

25) Power Reactor Development Co. v. Int'l Union, 367 U.S. 396(1961).

26) Quirk and Terasawa, supra note 17, at 842~843.

27)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35 U.S. 519(1978).

Vermont 州의 Vernon 市와 Michigan 州의 Midland 市에 核發電所를 建設·運營하려는 事業者에 대하여 NRC가 許可를 한 데 대하여 環境保存 團體가 각각 提訴한 사건에서 聯邦抗訴法院은 NRC의 規則制定節次가 核廢棄物 再處理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을 반영시키지 못하였으며 또한 에너지 節約을 環境影響評價書에서 代案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판시, NRC의 許可決定을 파기하였다. 이에 NRC와 原子力事業者들이 大法院에 上告하였다.

聯邦大法院의 William Rehnquist 判事は 문제가 된 非正式規則制定 절차는 法院이 行政廳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最大限의 節次的 要件이며 行政廳은 그 이상의 節次를 스스로 채택할 수 있지만 法院이 그 이상의 節次를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에너지 節約을 代案으로 포함하지 않은 NRC의 決定도 결코 恣意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聯邦抗訴法院의 判決을 파기하였다.

Vermont Yankee 判決은 聯邦行政節次法上 規則制定節次에 대한 司法審査의 限界를 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또한 核에너지의 개발과 같은 科學的·技術的 分野에서의 司法審査의 役割을 消極的으로 설정한 判決로서도 의미가 깊다.²⁸⁾

(라) Three Mile Island 事件 : 1979년의 Three Mile Island 事件은 史上 가장 위험하였던 核事故로 政治的·社會的 衝激을 가져왔고 결국 核에너지에 관한 政策的 再檢討를 촉진시켰다. 이 事件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Metropolitan Edison 社는 Pennsylvania 州 Harrisburg 市 부근의 Three Mile Island에 核發電所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發電所는 2基의 原子爐(TMI-1, TMI-2)를 갖고 있었다. 1979년 3월 28일, TMI-1은 燃料를 공급받기 위하여 稼動을 정지하고 있었고, TMI-2는 正常稼動 중이었는데 TMI-2의 펌프系統에 고장이 발생, 放射能에 오염된 冷却水가

28) Vermont Yankee 判決에 대한 상세는, 徐元宇, 規則制定節次에 대한 司法審査의 限界, 公法研究 제10집(1982) pp. 137~148 및 李相敦, 環境政策法(1985) pp. 77~86 참조. 技術的 問題에 대한 司法府의 권한의 딜레마를 보다 광범한 차원에서 다룬 論文으로는, Yellin, High Technology and the Courts: Nuclear Power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94 Harv. L. Rev. 489 (1981).

누출되었고, 安全裝置가 또한 고장이 나서 原子爐가 용해(melt down)될 뻔한 危險한 狀況까지 이르러서 수습되었다. 당시 Pennsylvania 州知事は 주위 妊婦와 兒童의 疏開를 권고하였고, 사실 많은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피난을 갔었고, 州政府 당국은 한때 半徑 20 마일 내의 65 만명의 주민의 疏開를 검토할 정도로 긴급한 狀況으로 전 세계에 쇼킹한 충격을 주었다. 사건 직후 NRC는 TMI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 事故의 事後處理를 두고서 두 건의 중요한 訴訟이 발생하였다.

첫째 訴訟은 사고가 발생한 TMI-2로부터의 放射性 氣의 大氣 中의 배출을 허가한 NRC의 조치에 관하여서이다. TMI-2에 대한 氣 排出 許可는 TMI에 대한 運營許可(operating license)의 수정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原子에너지法 제 189 조는 原子力 發電所의 運營許可를 修正할 때는 30 日間 公告 후 聽聞(hearing)을 거쳐야 하되, 단 NRC가 그 修正事項에 重要한 危險(significant hazards)이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30 일간의 公告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NRC는 放射性 氣의 大氣 中 放出은 重要한 危險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公告와 聽聞의 절차를 생략하고 運營許可를 변경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몇몇 市民은 許可 變更은 重大한 危險이 있는 문제라고 주장, 聽聞의 실시를 요구하여 訴를 제기하였다. D.C. 所在 聯邦抗訴法院은 비록 NRC가 氣의 放出이 重要한 危險이 없다고 판단하여 30 일의 公告를 생략하더라도 聽聞마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判示하였다.²⁹⁾

두 번째 訴訟은 TMI-1의 稼動再開를 두고 발생한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TMI-2에서 事故가 발생했을 때 TMI-1은 燃料의 供給을 위하여 가동을 중지하고 있었다. 事故 직후 NRC는 TMI-1도 安全度의 檢사가 끝날 때까지 稼動을 中止하도록 지시하였다. 얼마 후 NRC는 TMI-1의 稼動再開의 與否를 결정하기 위하여 聽聞을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다. NRC의 聽聞公告는 利害關係人이 書面陳述書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TMI의 더 이상의 稼動에 반대하는 Harrisburg 市. 지역 주민의 단체인 PANE(People Against Nuclear Energy)는 TMI-1의 稼動再開에 반대하

29) Sholley v. NRC, 651 F.2d 780 (D.C. Cir. 1980).

는 陳述書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PANE는 TMI-1의 稼動再開가 Harrisburg市 지역 주민에 막대한 心理的 損傷(psychological health damage)을 줄 것이고 따라서 이 地域社會의 安定과 福祉를 크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NRC는 PANE의 異議를 배척하였다. 이에 PANE는 聯邦抗訴法院에 提訴하였다.

D.C. 地區의 聯邦抗訴法院은 環境政策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은 TMI-1의 稼動再開가 인근 地域사회에 미치는 心理的 影響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補充的 環境影響評價書(Supplemental EIS)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判定하였다. 이에 NRC와 Metropolitan Edison社는 聯邦大法院에 上告하였다.

聯邦大法院은 NEPA는 단지 관련 行政廳으로 하여금 提案된 行爲의 環境的 影響을 평가하라고 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環境影響評價書(EIS)의 作成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어떤 重要的 聯邦政府機關의 行爲에 의하여 物理的 環境에 變化가 발생하고 이러한 變化와 影響의 사이에는 相當因果關係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TMI-1의 稼動再開와 PANE의 會員들의 心理的 損害 사이에는 危險이란 요소가 因果關係로 존재하더라도 이는 NEPA가 적용되기는 너무나 막연한 關係라 하여 抗訴法院의 判定을 파기, NRC를 지지하였다.³⁰⁾

한편, Three Mile Island 事件을 조사한 大統領 特別委員會가 제출한 報告書("Kemeny Commission Report")³¹⁾는 NRC가 제정한 原子爐安全規則이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여 실질적인 安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마) 核에너지 安全·研究·開發示範法(The Nuclear Safet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50)³²⁾: 核에너지에 대한 批判적인 무드가 팽배한 가운데 核에너지의 效率적이고 안전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核에너지 安全·研究·開發·示範法」이 Carter 行政府의 마

30) Metropolitan Edison Co. v. People Against Nuclear Energy, 103 S. Ct. 1556(1983).

31) The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the Accident at Three Mile Island, The Need for Change: The Legacy of TMI(Oct. 1979).

32) Public Law 96-567(96 th Congress).

지막 순간에 議會를 통과하였다.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核에너지는 20세기 말까지 美國에 있어서의 電力에너지의 2大源泉의 하나인데, 極度の 安全性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核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의 관건이다. 核發電所의 安全은 事業者의 責任이며, 이에 있어서 聯邦政府의 役割은 核發電所의 안전한 運營을 가져오기 위한 科學的·技術的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研究, 開發 및 示範 計劃을 수행하는 것이다 (Sec. 2(a)). 聯邦政府는 1981會計年度부터 5년간에 걸쳐 심각한 核發電所事故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事故의 경우 주위의 住民들에 대한 影響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의 計劃을 실시한다 (Sec. 2(b)). 이러한 計劃은 에너지長官의 소관 하에서 수행될 것이다 (Sec. 4). 이를 위하여 에너지長官은 模疑原子爐를 운영할 것이며 (Sec. 5) 專門要員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한 부서 (Federal Nuclear Operation Corps)를 창설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며 (Sec. 6), 核安全에 관한 情報가 議會, 聯邦政府, 州 및 地方政序, 關聯企業, 科學者 및 一般公衆에 公開되어야 한다 (Sec. 7). 에너지長官은 이를 위한 전반적인 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Sec. 8).

(2) 우리 나라의 法制——現況과 問題點——

核에너지의 開發을 직접적으로 規制하는 法律은 1982년 9월 30일에 발효된 原子力法(법률 3549호)이다. 核에너지 活動에 대한 法制를 核發電所의 건설과 運營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核發電所 事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行政廳은 科學技術處長官이다. 즉, 核發電所를 建設하고자 하는 者 및 건설된 核發電所를 運營하고자 하는 者는 科學技術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原子力法 제11조, 제21조). 許可基準은 技術能力, 安全度 確保 및 環境汚染의 可能性이 없어야 할 것이다(同 제12조, 제22조). 이 경우에 申請者는 모두 品質保證計劃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同 제15조, 제23조). 그러나, 建設許可時에는 環境影響評價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同 제11조②). 따라서, 環境保全法은 단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의 重要事業의 경우에만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을 요구하지만(環境保全法 제5조), 原子力法은 民間業者가

核發電所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도 이의 작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政府 全額出資의 韓國電力公社가 事業者이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와 같이 法에 의하면 科學技術處長官이 중요한 許可權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의 計劃과 실시를 주관하는 것은 動力資源部임을 생각하면 과연 科學技術處長官이 실질적인 主務官廳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는 의심스러우며 특히 科學技術處長官이 動力資源部長官의 事業을 효과적으로 規制할 수 있을런지는 또한 의심스럽다. 한편, 科學技術處長官 소속 하에 審議 議決機關으로 原子力委員會가 있으나(原子力法 제3조) 그 기능은 다분히 諮問的이며 許可權이나 決定權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核發電所의 建設 許可는 사실상 行政府內의 一方的 決定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核事業者가 事業所 이외의 場所에 폐기하고자 할 때는 科學技術處長官에 事前 申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이다(同 제84조). 核廢棄物의 처리는——그것이 高準位廢棄物이든 低準位廢棄物이든——극히 중요한 문제인데, 環境影響評價書의 作成은 그만 두더라도 최소한 主務官廳의 事前許可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核에너지 事業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토록 중요한 문제의 行政上 決定에 國民이 참여할 수 있는 行政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역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IV. 核廢棄物의 處理

(1) 放射性廢棄物의 問題

核發電所의 運營은 상당한 분량의 放射性 廢棄物(radioactive wastes)을 산출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³³⁾

첫째는 原子爐의 裝備와 附屬, 核燃料과 접촉한 容器, 衣服 등 이른바

33) Walker,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Sources and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in C. Walker et al. (ed.), supra note 5, 27, 65~71.

低準位 廢棄物(low-level wastes)이다. 100 톤당 1 curie 미만의 放射能을 갖고 있는 超우라늄(transuranic elements)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低準位 放射性 廢棄物은 發電所內 또는 기타 격리된 지역의 얕은 地下 저장소에 보관되고 있다.

둘째는 原子爐 그 자체이다. 原子爐의 수명은 30~40 년 정도로 壽命이 다한 原子爐, 즉 廢爐(decommissioned reactor)의 처치문제는 1990 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한 對策은 各國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결국은 高準位 放射性 物質과 나머지의 低準位 物體를 분리하여 각기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째는 原子爐를 거쳐서 나온 사용된 燃料(spent fuel)인데 가장 중요한 廢棄物로서 흔히 高準位 核廢棄物(high-level nuclear wastes)이라 할 때는 주로 이 使用된 燃料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輕水爐(LWR) 그리고 이의 變型인 PWR 는 3%의 濃度の 濃縮된 U_{235} 를 燃料로 사용한다. 그리고 Canada 에서 개발된 CANDU 型 原子爐는 自然狀態의 우라늄(0.715%)을 燃料로 사용한다. 使用된 燃料에는 人間과 生態界에 치명적인 高準位の 放射性 同位元素(highly radioactive isotopes)를 비롯하여 완전히 소비되지 못한 우라늄, 및 플루토늄(plutonium)이 포함되어 있다. 몇몇 同位元素는 수천년이 지나도 放射性을 띠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永久的 隔離·保管이 필요하다. 한편, 이에 포함된 플루토늄은 再處理(reprocessing)하여 다시 사용될 수 있다. 1982년 말까지 美國에는 약 1萬톤의 高準位 廢棄物이 산출되었으며, 每年 약 1,500 톤 정도가 새로이 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84년 말까지 이미 200톤의 高準位 廢棄物이 산출되었는데, 건설 중인 6개의 原電을 비롯하여 20개의 原電이 가동하게 될 西紀 2,000년까지는 무려 7,300 톤 정도의 高準位 廢棄物이 產出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³⁴⁾ 이러한 高準位 核廢棄物이야말로 核에너지 開發에 부수되는 가장 큰 문제거리이다.

使用된 燃料(spent fuel), 즉 高準位 核廢棄物의 處理에 있어서 또한 문제가 되는 점은 再處理(reprocessing)이다. 즉, 使用된 燃料는 U_{235} 와 플

34) 中央日報, 1984. 12. 24字 8면 기사.

루토늄을 포함하고 있는데 U_{235} 를 분리하는 것은 非經濟的이며 技術的으로 어렵지만 플루토늄을 分離·抽出하는 것은 손쉽고 또한 값싸다. 따라서, 使用된 燃料를 再處理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하면 廢棄物의 量도 많이 감소할 뿐더러 플루토늄은 현재 개발 중인 高速增殖爐(Fast Breeder Reactor: FBR)에서 새로운 原子力發電의 燃料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高速增殖爐의 開發은 技術的으로 예상보다 어려워져서 이 계획은 지연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플루토늄은 核爆彈의 손쉬운 原料가 되기 때문에 核武器擴散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再處理하는 경우에는 再處理하고 남은 廢棄物과 高速增殖爐에서 산출되는 燃料가 최종적 廢棄物이 되며, 再處理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使用된 燃料를 모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後者의 경우에는 특히 未來에 再處理를 하기 위하여 임시로 貯藏할 것인가 또는 永久的으로 貯藏할 것인가가 또한 政策上 選擇의 課題가 될 것이다.

여하튼, 高準位의 核廢棄物의 處理를 두고서는 地下 保管 以外の 선택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 現實이다.³⁵⁾ 1960년대 전까지는 海底에 이를 투기하였지만 1972년에 체결된 London 協約은 核廢棄物의 海洋投棄를 금지시켰다.³⁶⁾

(2) 核燃料再處理에 관한 各國의 政策

(가) 美 國 : 美國에서의 使用된 核燃料의 再處理 문제는 原子爐의 개발과 그 由來를 같이하고 있다. 즉, 1954년의 原子에너지法(Atomic Energy Act)의 통과로 核技術이 民間化된 후 불과 1년 후인 1956년 초에 原子力委員會(AEC)는 民間事業者들이 核燃料의 再處理 分野에 참가하도록 지원할 것을 선언하였다. 당시 AEC는 1961년 경이면 商業的 目的으로 核燃料가 再使用될 수 있을 것이라고 豫想하였다. 그러나, 民間事業者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展望의 不透明으로 지연되었다. 최초의 2個所의 再處理 시설은 民間事業者(Nuclear Fuel Services社 및 General Electric

35) G. Rochlin, *Plutonium, Power and Policies*, pp. 11~14, 67~71 (1979).

36) 李相敦, 海洋投棄로 인한 海洋汚染의 國際的 規制, 中央大 法學論文集 제9집(1984) pp. 77~109 참조.

社)가 중도에서 포기함으로써 종료되어버렸다. Allied General Nuclear Services(AGNS)가 시도한 세 번째의 시설은 1975년에야 완성되었는데,稼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政策上的 變化로 停止되고 말았다. 즉, AGNS의 再處理工場의 稼動을 두고서 核規制委員會(NRC)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混合하여 사용하는 原電方式의 環境影響에 대한 一般的 評價書(Generic Environmental Statement on Mixed Oxide Fuel: GESMO)를 발표하고 聽聞(public hearings)을 개최하였는데, 이의 節次에 반대하는 環境保護團體가 訴訟³⁷⁾을 제기하여 지연되었다.³⁸⁾ 또한, 1975년에는 이미 核에너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였으며, 특히 그 해에는 프랑스政府가 파키스탄과 韓國에 再處理工場을 販賣하는 契約을 제안하였고, 西獨政府는 再處理工場을 포함한 一切의 核技術을 제공하는 契約을 브라질과 체결하였다. 이러한 再處理 技術의 擴散은 美國에 자극을 주어서 1976년 10월에 Ford 大統領은 核擴散의 위험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核燃料의 再處理는 中止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美國의 政策을 발표하였다. 1977년 초에 새로 들어선 Carter 行政府는 이제까지의 核에너지의 政策을 再檢討하고 그 해 4월에 美國은 核燃料의 再處理와 高速增殖爐의 개발을 무기한 中止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GESMO 聽聞도 中止되었다. 그리고 美國의 노력으로 프랑스와 파키스탄 및 프랑스와 韓國 사이의 再處理工場 販賣協商은 결렬되었다.³⁹⁾

한편, Carter 行政府는 1978년에 관계 행정기구가 모두 참여한 特別委員會(Inter-Agency Review Group)를 창설하여 核에너지의 전반에 관한 政策을 검토하도록 하였다.⁴⁰⁾ 그리고, Carter 行政府의 마지막 순간인 1980년 12월, 議會는 高準位廢棄物 이외의 核廢棄物, 즉, 低準位廢棄物(low-level nuclear wastes)을 처리하기 위한 法律을 통과시켰다.⁴¹⁾ 이 法律의 주된 骨子は 各州政府는 그 州 내의 核發電所에서 산출된 低準位廢

37) NRDC v. U.S. NRC, 539 F.2d 824(2nd Cir. 1976).

38) G. Rochlin, *supra* note 35, at 71~72.

39) G. Rochlin, *supra* note 35, at 127~128.

40) Gould,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blem, in C. Walker et al.(ed.), *supra* note 5, 1, 6~7.

41) The Low-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ct, Pub. Law 96-573.

棄物을 그 州政府의 責任下에 처리할 責任이 있으며, 低準位廢棄物 처리 문제는 地域的 次元(regional basis)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1년에 들어선 Reagan 行政府는 核燃料의 再處理를 추진하고 高準位廢棄物을 固化化하여 地下의 保管所에 보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982년에 통과된 核廢棄物政策法(Nuclear Waste Policy Act)은 에너지省으로 하여금 1985년까지 세 개의 地點을 核廢棄物保管所의 豫定地로 지정하여야 하고 大統領은 이 중의 한 곳을 1987년까지 指定하도록命하고, 종국적으로는 2개소에 이같은 保管所가 설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의 保管所의 豫정지로는 Washington 州, Nevada 州, Utah 州, Texas 州, Louisiana 州 및 Mississippi 州內의 9개 地點이 후보로 등장하고 있으나 해당 州의 反對輿論은 또한 거세다. 同法은 해당 州政府는 自州內의 保管所 豫정지 지정에 대하여 拒否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또한 議會는 州의 拒否權을 壓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保管所가 건설되면 核產業體는 每月 4천만弗의 運營資金을 제공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豫定地 選定作業은 지연되어서 1990년에야 에너지省은 3개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따라서 최초의 保管所의 運營은 결국 20세기 말 또는 21세기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²⁾

(나) 프랑스 : 프랑스는 核燃料의 再處理와 高速增殖爐의 개발의 의 심할 바 없는 先頭走者이다. 美國과는 달리 프랑스는 輕水爐에 再處理된 燃料를 사용할 계획은 없고 따라서 高速增殖爐의 建設을 굳게 밀고 나가고 있다. La Hague에 있는 UP2 工場은 세계 유일의 商業的인 核燃料再處理工場이며,⁴³⁾ 조만간 역시 세계 최초의 그리고 유일의 高速增殖爐 Super Phenix 를 가동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英國 : 英國도 역시 再處理가 경제적인 에너지 政策임을 선언하고 이를 밀고 나가고 있다. 英國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高速增殖爐의 建設을 추진하고 있다.⁴⁴⁾

(라) 其他 : 西獨, 日本, 印度, 蘇聯 등 대부분의 核國은 再處理

42) Gould, supra note 40, at 7~14: TIME, Feb. 13, 1984, p. 10.

43) G. Rochlin, supra note 35, at 122.

44) Ibid, at 121-122.

를 추진하고 있다.⁴⁵⁾ 한편 우리 나라는 프랑스와의 계약이 결렬된 후 外國에서 再處理할 것같이 알려지기도 하였으나⁴⁶⁾ 아직은 명확한 政策決定이 없는 듯하다.

V. 核事故 被害賠償法制

原子力事業은 높은 危險을 안고 있는 事業이다. 지금까지 비록 核發電所는 매우 안전한 記錄을 보여 왔지만 만일의 경우의 事故는 참혹한 被害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法的 對策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核에너지의 안전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 裝置는 우선 1 件의 事故로 事業者가 破産하여 被害者도 事業者도 모두 破滅하는 狀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美國에서 民間事業者에 의한 核에너지 開發은 이를 보장한 「Price-Anderson Act」이 제정되고 나서부터였다. 여기서는 美國의 「Price-Anderson Act」와 우리 나라의 「原子力損害賠償法」을 검토하기로 한다.

(1) 美國：Price-Anderson Act

1954년에 제정된 原子에너지法은 民間事業者에게 核産業에의 참여를 허용·촉진하였으나 民間事業者들은 核事業의 經濟性은 不透明하며 오히려 危險性이 막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事業參與에 消極的인 태도를 보였다. 核事業의 개발을 촉구하는 政府側에 대하여 당시 民間事業者 代表는 議會가 立法으로 核事故의 경우에 事業者의 責任을 制限하지 않는다면 核事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대한 議會의 반응이 1957년에 제정된 「Price-Anderson Act」이다.

Price-Anderson Act의 立法目的은 公衆을 보호하고 核에너지事業을 추진하는 것인데, 責任保險의 加入과 責任의 總體의 制限을 骨子로 하고

45) *Ibid.*, at 120—125.

46) *Ibid.*, at 125.

있다.

1957년에 최초로 제정된 同法은 10년 후에 滿了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67년에 다시 10년간 연장되었고, 1975년에 다시 1987년까지 연장되었다.

1957년의 최초의 法律은 1件的 核事故(single nuclear incident)에 대한 總體의 責任의 한도를 5億弗과 당시 民間保險業界로부터 填補받을 수 있는 한도(6천만弗)의 合計, 즉 5억 6천만弗로 制限하였다. 그리고, 事業者는 6천만弗을 保險額으로 한 責任保險契約을 民間保險業界와 체결할 것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被害額이 6천만弗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弗을 한도로 聯邦政府가 填補하도록 하였다. 이는 분명 聯邦政府가 위험을 감당함으로써 核發電所의 건설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였다. 그 후, 核發電所가 속속 建設되고, 따라서 核事業이 본 케도에 오르자, 1966년, 1975년, 그리고 1979년에 改正되었는데 그 결과로 責任의 대부분을 業界가 共同으로 부담하도록 되었다. 1979년의 改正 후의 현재의 同法의 構造는 다음과 같다.⁴⁷⁾

10만 KW級 이상의 商業的 核發電所는 民間保險業者로부터 合理的인 保險料로 해결할 수 있는 最高의 保險金을 정한 責任保險을 체결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와 동일한 金額이 전보될 수 있는 方法을 核規制委員會(NRC)에 입증하여야 한다. 주로 民間保險會社에 의하여 填補될 이 額數는 1979년의 改正 이후 1억 6천만弗이다. 어떠한 事故로 인한 被害가 이를 초과하게 되면 每事故當 1개의 商業的 發電原子爐소유자가 5백만弗씩 각출하는 3억 3천 5백만弗(1983년에 67개의 原子爐가 운영 중)을 최고한도로 한 基金에서 填補된다. 따라서, 피해액이 3억弗이라 하면 1억 6천만弗은 保險을 통하여 전보되고, 1억 4천만弗은 3억 3천 5백만弗을 한도로 比例하여 各 原子爐 소유자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各 原子爐 所有者가 各출하는 한도는 每事故當 최고 5백만弗이며, 年間 1천만弗을 초과할 수 없다.

Price-Anderson Act이 정하는 每事故當 總體의 責任의 限度는 5억 6

47) D. Zillman and L. Lattman, *Energy Law* (1982), pp. 626~629.

천만弗이다. 따라서, 위의 1억 6천만弗과 3억 3천 5백만弗의 合計인 4억 9천 5백만弗과의 差額인 6천 5백만弗은 聯邦政府가 부담할 補償額이다. Price-Anderson Act 이 填補하는 대상은 核事業者뿐 아니라 責任 있는 제 3 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核發電所에서의 事故뿐 아니라 주변의 어떤 다른 施設에서의 事故가 核發電所에서의 事故를 초래한 경우도 위의 賠償體系는 적용된다. 이러한 責任의 制限에 따라서 事業者들은 一切의 普通法上的의 抗辯事由(common law defense)를 포기한다.

한편 Price-Anderson Act 이 財産權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違憲的 法律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즉, Price-Anderson Act 이 事業者의 責任을 制限하여 核發電所 주위의 住民들의 財産權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訴訟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聯邦大法院은 1978년에 同法은 普通法에 대한 有效한 代案이라고 判示한 바 있다.⁴⁸⁾

Price-Anderson Act 이 填補하는 것은 이른바 異例的인 核事故(extraordinary nuclear occurrence)로 인한 被害이다. 따라서, 核事故로 인하여 外部에 放射能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發電所 기능이 마비된 경우에는 Price-Anderson Act 은 적용되지 않는다. 1979년의 Three Mile Island 사건으로 인한 發電會社의 損害는 1981년 말까지만 하여도 40億弗에 육박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고가 난 TMI-2 原子爐의 수리에만도 10억弗이 소요되었고, 發電所 내의 放射能 汚染의 청소, 그리고 NRC의 명령에 의한 TMI-1의 稼動中止는 실로 막대한 損害를 가져온 것이다. 어느 企業이든간에 이러한 損害를 擔當할 能力은 없다. 따라서, 누가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損害를 보상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課題를 남겼다. Three Mile Island 事件의 또 하나의 敎訓이었다.⁴⁹⁾ 또한, 核發電會社의 職員이 放射能에 汚染된 경우에도 Price-Anderson Act 은 적용되지 않는다.⁵⁰⁾ 따라서, Price-Anderson Act 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平常的 運營 과정에서 발생한 汚染事故가 아니고 그야말로 보통 발생하지 않는 큰 事故의 경우이다.

48) Duke Power Co. v. Carolina Environmental Study Group, Inc., 438 U.S. 59 (1978).

49) D. Zillman and L. Lattman, supra note 45, pp. 629~630.

50) Silkwood v. Kerr-McGee Corp., 667 F.2d 908(10th Cir. 1981).

(2) 우리 나라 : 原子力損害賠償法

1969년에 제정되어서 1975년에 개정된 原子力損害賠償法이 규정하는 우리 나라의 核被害賠償의 體系는 다음과 같다.

첫째, 同法이 적용되는 “原子力損害”란 核燃料物質의 原子核分裂過程의 作用 또는 核燃料物質이나 그에 의하여 汚染된 것의 放射線作用 또는 毒性的 作用에 의하여 생긴 損害”를 의미하여 다만, “당해 原子力事業者가 받은 損害 및 당해 原子力事業者의 從業員들이 業務上 받은 損害는 제외된다(法 제 2 조①).”

따라서, 우리의 法이 적용되는 범위는 美國의 Price-Anderson Act 이 적용되는 범위보다 광범하여서, 異例的인 核事故(extraordinary nuclear occurrence)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放射能 汚染에도 적용되며, 특히 核廢棄物의 保管·管理 중에서 발생한 放射能 汚染被害에도 적용된다.

둘째, 原子力事業者는 原子爐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原子力損害에 대하여 無過失責任을 진다. 다만, 異例的으로 甚大한 天災·地變·戰爭 또는 이에 準하는 事變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法 제 3 조①). 이 條項은 물론 民法上 過失責任原則에 대한 特則이다. 그러나, 제 3 자의 행위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事業者가 免責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제 3 자의 행위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인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法 제 4 조). 그러므로 北傀의 무장간첩이 우리의 原子力發電所를 파괴하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도 事業者는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무장간첩의 파괴행위는 “戰爭 또는 이에 준하는 事變”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原子力事業者는 原子力損害를 賠償함에 필요한 措置를 한 후가 아니면 原子爐의 운전을 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의 損害賠償措置는 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과 原子力損害賠償契約의 締結 또는 供託이다(法 제 5 조). 이 경우의 責任保險契約金額 및 損害補償契約金額 또는 供託金額은 그 事業所마다 30 億원을 한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의 범위 안에서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은 金額이다.

이 條項은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同法에서 賠償措置額을 규정하지 않고 大統領令에 위임하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에 위임한 것은 부당하다. 賠償措置額은 중대한 사항인만큼 法律에서 명백히 규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同法에서 규정한 最高額 30億원은 그 자체로서 너무 미약한 금액이다. 즉, 美弗貨로 환산해서 3백 75만弗에 불과하다는 것은 년·센스라 할 것이다.

여하튼, 同法은 民間의 責任保險을 통하여 填補할 수 있는 金額 이상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政府와 原子力損害賠償契約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法 제9조). 즉, 政府가 일종의 保險者가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 관한 法律”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被害가 責任保險金額과 賠償補償契約金額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政府는 原子力事業者에 대하여 國會의 議決을 거쳐서 필요한 援助를 하며, 또한 被害者의 救助 및 被害의 擴大를 防止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法 제14조). 따라서, 賠償措置額을 초과한 被害가 발생한 경우 政府는 國會의 議決을 거쳐서 事業者에게 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法文上, 放射能被害者는 政府에 대하여 補償을 청구할 수는 없음은 명백하다.

우리 法은 다음과 같은 疑問點을 갖고 있다.

첫째, 原子力損害賠償法은 民法을 통한 救濟를 排除한 것이냐는 점이다. 法은 이에 관한 言及이 없다. 따라서, 被害者는 原子力損害賠償法에 의하거나 또는 民法上 不法行爲條項에 의하여 被害를 請求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民法上 不法行爲責任을 묻는 경우에 被害者는 事業者의 過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原子力事業者의 損害賠償措置額은 事業者의 責任의 限度를 설정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法은 분명치 않으나 損害賠償措置額은 責任의 限度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民法上 不法行爲責任에 근거하여 被害의 賠償을 청구하는 被害者는 賠償措置額에 관계없이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을 뿐더러 原子力損害賠償法에 의거하여 被害賠償을 청구하는 被害者도 賠償措置額에 관계없이 賠償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原子力損害賠償法은 事業者의 無過失責任과 被害賠償措置의 法定化에 의미가 있으며, 原子力事業者를 保護하고 育成하는 側面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美國의 Price-Anderson Act 이 事業者의 責任을 제한하여 核事業의 促進을 기한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30 億원의 賠償措置額은 너무나 미약하다. 따라서, 다소간의 立法的 補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結 語

以上, 核에너지 開發에서 제기되는 法的 側面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具體的인 結論은 各章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음으로 이를 再論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分野에 대하여 法學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의 法學은 教科書의 總論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現實의이며 特殊한 分野를 等閑視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날로 擴大되어가는 現代社會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法學 및 法律家의 領域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 環境과 資源에 관하여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環境과 資源의 문제는 분명히 國家의 次元의 政策問題이고, 이러한 政策은 반드시 法律이라는 道具를 통하여 具現된다. 法學에 의하여 여과된 政策만이 民主的이며 또한 法治主義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야에서도 法學과 法律家의 役割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本稿가 이러한 면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筆者의 所望이다.